

醫務記錄의 法律的 意味

이 상 교

〈세브란스병원 원무1과 법무계장〉

〈이 글은 세브란스병원 주최로 열린 1996년도 의무기록 Workshop의 발표내용이다.

—편집자〉

1. 서 론

의료법 제21조 1항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의 작성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및 병력, 주된 증상, 치료내용, 진료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제17조)과 보존기간(제18조)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는 원래 환자에 대한 상태와 치료경과를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존하므로써 의사가 진료행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의료분쟁 시 과실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료비청구 및 과잉진료에 대한 판단기준도 되며 적정진료를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의무기록에 대한 법률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의무기록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특히 의료분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

(1)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 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환자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동시에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함부로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의 열람 또는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료법 상으로 환자가 자신에 대한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은 요구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등은 환자가 직접 요구할 수 없고, 현재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만이 환자가 전에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시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할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16조 이하)이나 증거보전절차(동법 346조 이하)등을 통해서도 환자측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제2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료경과 및 예전

다. 치료내용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 의사의 건강진단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1)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가. 환자의 명부 5년

- 나. 진료기록부 10년

- 다. 처방전 5년

- 라. 수술기록 10년

- 마. 검사소견기록 5년
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사. 간호기록부 5년
아. 조산기록부 5년
자. 진단서등 부본 3년

2)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에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 등을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

3. 진료기록과 의료분쟁

(1)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법원은 일정한 경우 문서소지자에게 문서제출을 명령(민사소송법 제316조)할 수 있는데, 만일 문서소지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문서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21조)

1) 인용문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동조 1호), 즉 의료인이 소송에서 인

용한 문서(진료기록부)를 소지한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인용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열람청구권이 있는 문서: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해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동조 2호), 즉 신청자에게 진료기록부의 인도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현재 독일의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부을 열람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법(제20조)상 환자의 진료기록열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소송에 있어서 진료기록은 본 항에는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 항의 이익문서 또는 법률관계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만 할 것이다.

3) 이익문서: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때(동조 3호 전단),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과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므로 이익문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인 의사가 소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는 피고(의료인)측의 법적 지위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환자)측에 대하여는 이익문서이지만 피고(의료인)측에 대하여는 이익문서가 아니다.

4) 법률관계문서: 문서가 신청자와 소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동조 3호 후단), 환자와 의사(병원)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는 법률관계문서가 되어 환자측이

문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은 문서소지자(의사)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2) 진료기록부의 재판상 효력

진료기록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생긴다. 따라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부주의에 대한 정황근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진료기록의 수정이나 삭제, 추가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진실성이나 의사의 성실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진료기록의 증명력이 떨어질 것이다.*

대한병원협회지의 계속 구독 의사를 알려주십시오.

저희 대한병원협회지는 병원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병원내의 인사 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직책명으로 발송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 구독을 못하시거나, 혹은 안보시는 분들께 배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효과적으로 우송해 드리기 위해 계속 구독의사를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계속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신청이 없으면 부득히 발송이 중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현재 병원협회지를 받고 계시는 분

방법: 봉투에 찍힌 코드번호(C:0000XXXX F:bb)와 주소를 적고, 계속구독 여부를 표시하여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십시오.

마감: 1996년 8월 31일

기타: ■ 주소나 직책을 변경하시려는 분은 현재 받아보는 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십시오

■ 새로 구독하시려는 분은 주소와 정확한 직책명을 적어 신청하여 주십시오

■ 자택주소로는 발송이 안되니 반드시 근무처로 신청해 주십시오

■ 병원장님은 그대로 발송이 되므로 재신청을 않으셔도 됩니다.

보낼곳: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31-1 현대빌딩 14층

대한병원협회지 담당자

FAX: 716-4904